

# 선진국의 병원폐기물 관리현황

金銀珠

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

최근 병원폐기물의 증가로 인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 며 병원폐기물은 전염성폐기물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관리의 철저 및 합리적인 처리가 요구된다.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병원폐기물에 대한 중 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법률 및 그 세부지침으로 병원폐기물의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 에서의 폐기물 분리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어 의료기관내에서도 수송 및 운반 등의 처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또한 국가간 공동체제를 설정하거나 혹은 정부와 민가 단체가 혐의하여 병원폐기물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병원폐기 물의 노출을 적극 억제하고 있다.

## I. 선진국의 병원폐기물 내용과 정의

- ㅇ 선진국은 의료폐기물이나 병원폐기물이란 용어보다 전염성폐기물이란 용어가 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, 전염성폐기물에 대한 정의도 수년간 논의되 어 오고 있음.
  - 병원폐기물 관리기준의 골격은 세계보건기구(WHO)에서 권장한 기준을 인용하 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폐기물의 분류나 처리기준은 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 지 않음.
- WHO를 비롯한 선진국의 전염성폐기물에 대한 내용과 정의를 살펴보면, 전염성폐 기물에 대한 개념은 대체적으로 공통성이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포괄적으로 지정

하였고 WHO나 독일은 좀 더 세분화한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음.

표 1. 선진국의 전염성폐기물의 내용과 정의

국명 혹은 기관명	전염성 폐기물의 내용 및 정의	
세계보건기구	<ul> <li>전염성 병원균을 배양한 것이나 균주</li> <li>전염성 환자의 외과수술이나 해부에서 나온 폐기물</li> <li>격리실의 감염환자에서 나온 폐기물</li> <li>수술중의 감염환자와의 접촉으로 생긴 폐기물(시험관, 필터 등 투석기구, 사용한 수건, 가운, 앞치마, 장갑)</li> <li>병원균을 접종하였거나 전염병에 걸린 동물과 접촉된 폐기물</li> </ul>	
독일	<ul> <li>연방전염병예방법에 정해진 폐기물</li> <li>혈액이 묻은 주사기, 주사침 특히 외상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폐기물</li> <li>미생물학 또는 혈청학 관련 시설 및 실험실에서 나온 폐기물</li> <li>병리학실, 수술실, 산부인과, 혈액보관소에서 나온 신체 부위나 조직</li> <li>처리에 관한 법적 규제는 없으나 검사과정에서 병원성 세균의 존재가 의심되는 실험동물</li> <li>병원성 세균이 존재하는 동물관련 시설에서 나온 배양체 또는 배설물</li> </ul>	
미국	<ul> <li>CDC가 정한 격리폐기물</li> <li>감염과 관련된 배지와 균주</li> <li>혈액류</li> <li>병리계통폐기물(인체조직 등)</li> <li>상해성(傷害性)폐기물</li> <li>실험동물관련폐기물</li> </ul>	
일본	<ul> <li>혈액, 혈장, 혈청 및 체액, 그리고 혈액제제</li> <li>수술 등으로 배출된 병리폐기물</li> <li>혈액 등이 묻은 예리한 기구(칼, 바늘 등)</li> <li>병원미생물과 관련된 실험, 검사 등에 사용된 기구 및 배지</li> <li>수술기구</li> <li>기타 혈액 등이 부착된 물건</li> </ul>	

#### Ⅱ. 미국의 병원폐기물 관리제도

- 미국의 연방정부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로 인한 2차적인 피해를 줄이고자 환경보호단체와 함께 사업을 진행시켜 오고 있음.
- 미국에서 처리되고 있는 병원폐기물의 처리방법은 현장소각(자체소각)이 60%, 현장에서 전처리(멸균)가 20%, 지역처리가 20%로 이루어지고 있음.
  - 최근 대기오염규제의 강화로 자가소각처리에 대기오염 제어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지역처리장 건설이 대두되고 있으며 병원폐기물의 수거, 운반, 처리, 처분 등에 관해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음.
  - 또한 병원적출물의 종류와 처리방법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포괄적으로 정한
     다음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함.

#### 1. 미국의 의료폐기물 추적법(Medical Waste Tracking Act)

- 미국은 의료폐기물 추적법을 제정하여 의료폐기물에 대한 환경적, 보건적 위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.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, 이동, 처분에 관한 정 보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확실하게 관리하여 이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불건전하게 처리, 처분되어 인간 및 환경에 위해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- 이 법은 1988년에 기존의 자원보전과 재활용법(RCRA: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)의 부제 J항에 의료폐기물 추적법을 제정하여 의료폐기물의 저장, 취급, 운송, 최종처분 등을 규제하고 있음.
- 미국의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방안 및 그 수행지침들의 특징은 정부차원에서의 의료 폐기물 관리가 감시차원의 법규제보다는 선도, 계몽 및 지도 등의 차원에서 수행되 고 있으며, 실질적으로 수행가능한 법안의 제정 및 알기 쉬운 매뉴얼의 제공 등을 통하여 배출원인 의료기관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리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 다는 점임.
- 이 의료폐기물 추적법의 주요 내용
  - 감염성폐기물은 분별하여 배출하고, 적정 포장용구를 사용하여 색표시하고, 포장용기를 밀폐 우반하여 최단기간내 살균 및 소각 처리토록 함.

- 폐기물의 흐름과 동시에 배출사업자, 수집, 우송자, 처리업자 사이에 인계인수 사항과 각 업자의 업무분담 내용을 싸인하고 배출업자에게 최후 카피를 송부하 여 처리한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시스템임.
- 폐기물 추적의 대상은 병원, 의원, 치과병원, 동물병원, 보양소 등에서 감염에 관 련된 배지, 병리계 폐기물, 혈액류, 예리한 기구, 오염된 실험돗물폐기물, 전염병 환자로부터의 격리폐기물임.

#### 2. 미국 환경보호청 EPA(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)의 감염성폐기물 지침서

- 미국 EPA의 경우는 의료기관, 연구소, 식품 및 제약회사 등 전염성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전염성폐기물 관리를 선도하고자 "EPA Guide for Infectious Waste Management(1986)"라는 매뉴얼을 만들어 전염성폐기물의 적정관 리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.
  - 1976년 자원보전재생법에서 위임된 유해폐기물의 관리 시스템 확립의 일환으로 감염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지침서 개정판임.
  - 그 내용은 의료폐기물의 지정, 분리 분별, 포장, 저장, 수송, 처리, 처분, 응급대책, 직원 교육 등의 단계로 구분되어 수록되어 있음.
  - 이 지침에서의 병원폐기물 관리는 그 대상을 감염성폐기물에 한정하고 있으며, 증기 멸균 소각 등 화학 살균을 한 다음 처리 과정의 감시를 통해 생물학적 지 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그 관리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음.
- [그림 1]은 EPA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의 안전관리 흐름도로서 철저하 분 리수거로 전염성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 하는 것에 주력할 것과 의료폐기물의 분리 수거시 분리기준을 전염성 여부에 두어 전염성폐기물의 경우 붉은 포장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하거나 특수포장을 하며, 특별히 밀전포장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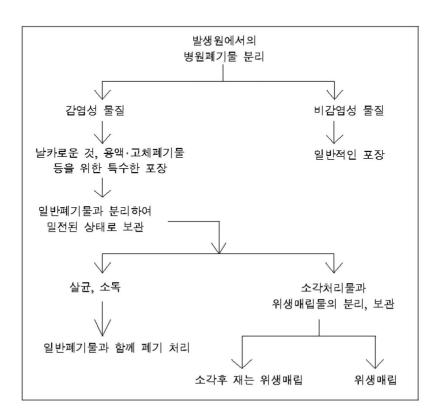


그림 1. 의료폐기물의 안전관리체계

#### Ⅲ. 일본의 병원폐기물 관리제도

- 일본도 관민합동으로 의료폐기물의 실태파악, 수거현황, 처리방법 및 시설관리 등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연구에 열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. 관민합동의 의 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연구반을 상설하여 정기적인 연구보고서 발간은 물론 폐기물 취급자들을 위한 세미나와 웍샾을 개최하고 있음.
- 일본은 후생성에서 1992년 "병원폐기물 처리 가이드라인"을 제정하여 감염성 폐기 물을 분별 배출토록 하고, 수집·우반시 특수용기에 포장하여 용기를 적색, 주황색, 황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. 또한 전용차량으로 운반하여 최단시간내에 소각 및 멸균처리토록 하고 위탁처리시 전표제(Manifest system)를 실시함으로써 병원폐기 물의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.

- 일본의 "병원폐기물의 처리 가이드라인"은 1987년 여름에 한 의사가 B형 가염에 대 한 연구를 하던 중 급성간염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, 병원폐기물에 의한 2차감 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1988년 7월에 의료폐기물 처리대책 검 토회가 설치되어 6차의 검토회를 거쳐 11월에 공포되었음. 여기에는 ① 병원진료소 등에서의 폐기물 관리체제 및 처리방법의 실태. ② 처리업자로부터의 처리실태. ③ 해외의 실정. ④ 처리체계와 처리기술에 관한 문제점 등이 포함되어 있음.
- ㅇ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의료관계기관으로부터 배출된 의료폐기물중 감염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순서를 정하여. 생활화경의 보전 및 공중위생의 향 상을 기하는 것임.
  -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의료관계기관, 구체적으로는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, 일 반진료소. 치과진료소. 노인보건시설, 위생검사업무를 하는 위생검사소, 의료 및 검사에 관계된 연구를 하는 연구소, 조산소 등이 해당됨.
  - 대상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(혈액 혈청 등 수술에 의해 배출되는 병리폐기물, 주 사침 등 혈액이 문어있는 예리한 물체, 병원미생물에 관련된 시험검사 등에 사 용한 시험기구 배지, 인공투석에 사용된 투석기구, 혈액이 묻은 거즈 등이 폐기 물로 배출된 것)임.

#### ㅇ 지침서의 주요내용

-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과의 구분 처리, 폐기물처리 책임자를 정하여 의료기관 의 관리체계 확립과 방사선, 수은, 크롬 등 취급상 위험한 폐기물의 타인위탁시 내용물을 명시하여 적절한 용기에 봉입 인도, 병원성 미생물 등에 오염된 또는 오염이 의심되는 폐기물의 타인 감염방지를 위한 적절한 장치의 강구
- 폐기물의 구분과 분류
- 폐기물의 처리
-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

#### Ⅳ. WHO의 의료폐기물 적정처리 권고

○ WHO는 1983년 "의료폐기물 적정처리에 관한 권고"를 통하여 의료계폐기물을 조직

장기와 같은 병리계폐기물, 피고름 등이 묻은 감염성폐기물, 칼, 바늘과 같은 손상 성폐기물 등 8개로 분류하여 방수가 되고 내충격이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. 이외같은 의료계폐기물은 색별화하여 보관하고, 밀봉한 운반 컨테이너를 사용 하여 수집 및 수송하며, 또한 감염성 및 손상성폐기물은 소각처리하고, 병리계폐기 물은 살균소독 후에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음.

- o WHO에서 제시한 지침서는 구주 19개국의 의료전무가들에 의하여 공동 제정된 것 을 그간 세부적인 수정을 가하여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임.
- O WHO에서 발표된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음.
  - 의료폐기물의 관리는 모든 단계에서 건강과 환경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의해 폐기물의 취급, 저장, 운송, 처리, 처분을 포함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.
  - 의료기관 전직원은 잘못된 의료물취급에서 생기는 위험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. 의료물관리에 포함된 전직원 트레이닝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부분이다.
  - 위험폐기물(병원성 및 감염성 위험화학물질)을 폐기물로부터 분리시켜 적절한 용기와 라벨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. 페기물의 포대나 콘테이너에 색을 넣어 고위험성 페기물용의 적절한 마크와 기호를 공히 채용한다.
  - 폐기물관리의 기본적인 접근은 실행가능한 발생원에서 폐기물을 감량화한다. 의 료폐기물의 관리에 있어 이 일은 특히 화학물질에 관해서 중요하다. 폐기물은 화경적 고려를 하고 폐기물경로에 넣어지는 물질의 양을 적게 하고 모든 시점 에서 재이용시키도록 해야 한다.
  - 소각은 병원성 및 감염성폐기물의 좋은 처리방법이다. 소각로는 이들 폐기물의 취급을 위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공포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히 설 계되어져야 한다.
  -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지극히 낮은 레벨의 방사능으로 반감기 도 짧다. 방사능잔유물은 방사성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을 때까지 방사능이 감쇄되도록 저장시킨다. 그 후 폐기물은 기타 특성 예를 들어, 화학계감염성 또 는 일반폐기물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.
  -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물처리의 종합계획을 가져야 한다. 처리에 관한 지침은 지 역의 환경에 따라 다르다. 의료물처리는 집중 프랜트에서 행해도 상관없다. 병 원 기타 의료기관의 신축 또는 그것의 개축설계에는 장래의 확장을 위한 장비 를 포함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필요성을 충분히 계산해야 한다.

- 의료폐기물 취급에 관한 입장은 개개의 의료기관 또는 복수의 의료기관에 최적 의 시스템을 채용될 수 있는 기본워리에 한정해야 한다.
- 각종 의료폐기물의 처리처분기술 특히 소각기술의 성능이나 능력에 대해 정보를 취집 교화할 필요가 있다. 타국의 의료물처리전략을 반영한 실험계획은 의의가 있다. 이와 같이 연구결과의 정보교화을 촉진하기 위해 병원기술자의 국제연맹 과 같은 조직의 협력을 얻을 필요가 있다.

### V. 유럽의 병원폐기물 관리제도

- ㅇ 유럽각국에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대응은 감염성 폐기물 등에 대한 2차 감염의 방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, 특히 문제가 있는 폐기물은 소각을 시키도록 하는 나 라들이 대부분임. 또한 병원폐기물의 자체 소각처리보다 지역처리를 강조하고 있으 며,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업자가 처리하고 있음.
- ㅇ 유럽 여러나라의 폐기물에 관한 규정은 미국에 비하여 본격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으나, 1982년에 수합된 제반규제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음.

표 2. 유럽각국의 병원폐기물 관리

국가	규제 및 지시 내용	폐기물 분류
프 랑 스	• 폐기물처리 재생에 관한 법률 75633호 • 보건사회안전성의 가이드라인 - 감염성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엄격한 구분 - 감염 위험있는 폐기물의 병원자체처리 - 일회용 용기나 봉지 사용 - 중간저장기지 확보와 장소의 격리, 주사기의 별도 수합 - 발생원의 소각처리와 소각이 불가능한 경우의 멸균처리	<ul><li>(1) 특정의 의료폐기물</li><li>(2) 수술실의 폐기물</li><li>(3) 기타 일반폐기물</li><li>(4) 주방 등의 폐기물</li></ul>
영 국	환경오염방지법('74)     보건위생노동안전법('74)     환경성, 보건사회안전성에 의한 합동특별검토위원회	(1) 비감염성폐기물 (매립, 소각) (2) 감염성폐기물(소각) (3) 요특수처리폐기물 (산, 벤젠 등)

# 정 책 동 향

# 표 2. 계속

국가	규제 및 지시 내용	폐기물 분류	
독 일	<ul> <li>폐기물처리법('77) 및 동시행령</li> <li>특수폐기물로서의 취급, 병원폐기물 관리책임자의 임명</li> <li>연방정부내에 의료폐기물처리처분검토위원회</li> <li>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사실상 규제력은 갖고 있음.</li> <li>병원내 저류장까지의 수집운반에 관한 규정</li> </ul>	(1) 일반폐기물 (2) 소각을 요하는 폐기물 (3) 요특수처리폐기물	
네덜란드	• 신폐기물처리법('77') - 서독의 폐기물처리법에 준하고 있으며(일반원칙), 특별지침서의 제정으로 보완	<ul> <li>(1) 해부폐기물</li> <li>(2) 실험동물사체</li> <li>(3) 감염성폐기물</li> <li>(4) 일반폐기물</li> <li>(5) 연구, 약제폐기물</li> </ul>	
덴 마 크	<ul> <li>병원위생 및 청소에 관한 일반규칙</li> <li>노동안전법 및 환경보호법</li> <li>의료폐기물의 저장, 반송, 소각에 관한 규정</li> <li>기본적으로는 의료폐기물의 완전소각을 권장함.</li> </ul>	<ul><li>(1) 의료관련 폐기물</li><li>(2) 일반폐기물</li></ul>	
이탈리아	• 행정고시로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규정	(1) 문제되는 폐기물 (2) 문제없는 폐기물	